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4. 4. 23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이정범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4년 4월 12일
- 회부일자: 2024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20년 약 9억 5천만원, 2021년 약 16억 4천만원, 2022년 약 16억 9천만원 ^{2023행감자료}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억제하고 적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노력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려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~2조)
- 나.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감등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노력 등(안 제4조)
- 라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실행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마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바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급식소에 대한 지도·점검(안 제7조)
- 사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공헌 표창(안 제8조)
- 아.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이유

- 식품은 생산, 운송, 소비,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석탄, 교통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거대 탄소 배출원임
- 과학저널 사이언스(Science)에 따르면, 전 세계 식품 생산 단계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137억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6%를 차지. 음식물이 생산부터 폐기까지 주기 전체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 환산량은 36억 톤. 음식물 처리 및 낭비로 인한 삼림 퇴화와 유기 토양 물질 처리 과정에서 8억 톤의 탄소가 배출됨
- 음식물쓰레기를 20%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 톤이 감소하며, 이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으며,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¹⁾가 발생함
- 2023년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^{붙임1 참조} 도내 초·중·고의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은 2020년 3,926톤 약 9억 5천만 원, 2021년 7,451톤 약

¹⁾ 출처: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홈페이지 <https://www.greenpeace.org/korea/update/24144/blog-ce-food-waste/>

16억 4천만 원, 2022년 7,759톤 약 16억 9천만 원으로 발생량과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

- 이에,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잔반 없는 빈 그릇 운동, 식단 공모제, 조리실의 1차 가공 음식재료 구입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음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억제하고 처리비용 절감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타 시·도 조례 검토

- 17개 광역시·도 중 ‘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’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며, 충북이 최초로 제정하는 것임
 - 유사 조례로 「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(2023. 10. 11. 제정)가 있음

다.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

- 안 제1조(목적)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학교급식 ‘구매·검수·조리·보관·배식 과정 등’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음
- 안 제2조(정의)에는 제1호는 「학교급식법」 제2조제1호²⁾에 따라 ‘학교급식’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 제2호는 ‘음식물류 폐기물’

2) 「학교급식법」 제2조제1호 : ‘학교급식’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.

용어 정의, 제3호는 ‘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음

- 안 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교육감, 교육장, 학교의 장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책무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음
- 안 제4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등)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게 하였으며, 이와 관련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- 안 제5조(실행계획 수립) 제1항에는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, 제2항에는 실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도교육청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, 목표 달성 방안,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과 홍보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담았음
- 안 제6조(실태조사)부터 제7조(지도·점검)까지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, 교육감의 지도·점검 횟수를 ‘반기별 1회 이상’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음

- 안 제8조(표창)부터 제9조(협력체계 구축)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에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여, 시책의 안착과 확산요건을 조성하고, 폐기물 처리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- 특히, 실행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지도·점검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
- 또한,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사항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3³⁾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업무로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재활용 방안 확대와 자체 세부 실행 방안 마련 등으로 학교 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임

3) 제14조의3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(농산물류·수산물류·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2.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
3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
4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5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,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붙임 1

1.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

<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식생활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 >

(단위:교, kg, 천원)

년도	지역	급 별	학교수	발생량			처리비용		
				순수잔반	전처리	소계	순수잔반	전처리	소계
2020	충북	초	260	610,469	1,204,203	1,814,672	141,675	244,473	386,148
		중	112	325,517	475,811	801,328	111,381	102,059	213,440
		고	81	567,034	743,438	1,310,472	190,489	156,093	346,582
계			453	1,503,020	2,423,452	3,926,472	443,545	502,625	946,170
2021	충북	초	259	1,429,306	2,296,206	3,725,512	302,167	462,006	764,173
		중	113	829,527	831,169	1,660,696	199,382	162,031	361,413
		고	81	1,001,651	1,063,392	2,065,043	268,182	243,435	511,617
계			453	3,260,484	4,190,767	7,451,251	769,731	867,472	1,637,203
2022	충북	초	256	1,519,300	2,281,828	3,801,128	317,969	451,012	768,981
		중	113	885,300	795,635	1,680,935	222,956	164,522	387,478
		고	79	1,205,564	1,071,563	2,277,127	307,097	226,440	533,537
계			448	3,610,164	4,149,026	7,759,190	848,022	841,974	1,689,996